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6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36146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redacted]
	담당변호사[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53451 판결
변 론 종 결	2020. 8. 21.
판 결 선 고	2020.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6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제3행의 '2018. 2. 28.'을 '2018. 2. 26.'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신고·납부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신고하였고, 2018. 2. 28. 위 각 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납부하였다(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한 세액은, 취득세 229,282,910원, 농어촌특별세 57,320,710원, 지방교육세 22,928,280원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적격 판정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두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반면, 선행처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6

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부적격 판정이 처분성을 가지며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적격 판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부적격 판정의 하자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심의위원회의 입주대상자 적격성 판정은 이 사건 조성사업에 부합하는 입주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적격 판정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6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적격 판정의 위법사유 즉, 분양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적격 판정을 하였다는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부적격 판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어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 ① 분양신청 과정에서 원고가 미비한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부적격 판정이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이 사건 분양공고에서 이미 분양 및 입주계약 신청시 제출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입주대상자 선정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가 이루어진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공고를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분양 신청을 한 때로부터 약 1년 전인 2014. 12. 31.에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이 사건 부칙조항도 마련된 점, ④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 혜택이 감축되는 과정에서 기존 혜택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예측가능하지 않았다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온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6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